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12. 9. 17.

행정위원회

##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2년 8월 30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2년 9월 6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7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위원회(2012. 9. 13)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재정국장 김정진 )

### 가. 제안이유

-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관련 조항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영업제한 등 행정처분 시 당사자들에게 사전통지, 의견제출 등 절차 이행을 명문화하여 행정규제에 따른 적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제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화 함(안 제14조의2 제1항)
  - 규제대상 :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
  -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이내
  - 의무휴업일 :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 영업제한 등 행정처분 시 행정절차법에 따른 이행조항 명문화  
(안 제14조의2제2항)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기영)

- 전주시 및 강동구·송파구 등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 개정과 처분과 관련하여 대형유통기업에서 제기한 행정소송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 및 절차상 문제점 등을 이유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이 인용되었고
- 우리구도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기업으로부터 2012년 7월 20일 영업제한 처분 집행정지 신청 소송이 제기되어 8월 7일 행정법원이 영업제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현재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에 있음.
- 따라서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2년 5월 17일 공포·시행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내용 중 자치단체장의 재량권 침해 논란 조항과 행정처분의 절차적 문제점을 보완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 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4조의2제1항에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하여 “ 구청장은 ~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 하도록 할 수 있다.” 는 일부 강행규정 형식의 조문을 “ 구청장은 ~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로 개정하여 재량의 여지를 두었고
  - 제1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조문을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함
    - 영업시간 제한을 종전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한다.” 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이내” 로 개정하고
    - 의무휴업일을 종전 “ 매월 2회로 하며, 휴업일은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휴업일로 지정한다.” 를 “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로 변경하였으며
  - 안 제14조2제2항을 신설하여 “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하는 경우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로 명문화하여 영업제한 등 행정처분시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여 절차적 문제점을 해소함.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6월 22일 서울행정법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하고 의무적으로 영업제한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고, 대형마트 등의 영업상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에 따라 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다고 판결함에 따라
- 우리구 조례도 위와 같은 부족함을 치유하고 관내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 및 유통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당초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2012년 7월 4일 시달된 서울시 권고안을 참고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나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147 호
----------	---------

제출연월일 : 2012. 8.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제안이유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관련 조항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영업제한 등 행정처분 시 당사자들에게 사전통지, 의견제출 등 절차 이행을 명문화하여 행정규제에 따른 적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제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화 함(안 제14조의2 제1항)

○ 규제대상 :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

○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이내

○ 의무휴업일 :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나. 영업제한 등 행정처분 시 행정절차법에 따른 이행조항 명문화  
(안 제14조의2제2항)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행정절차법」 제3조, 제21조, 제22조, 제2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필요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2.8.2~8.22, 20일간) 결과

- 1건 접수
  - 제출자 : 롯데마트 영등포점
  - 제출일시 : 2012.8.22(수)
  - 제출의견 : 의무휴업일 반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로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것에 대한 철회 요청
- 부서 의견 : 미반영
  -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 시간의 제한 등) 취지와 맞지 않음
- (2) 규제심사 결과 : 이상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검토필

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 하도록 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이내
2. 의무휴업일 :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제 14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하는 경우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